

# 발전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7. 09. 01.

□ 개정 : 2013. 03. 01.

□ 개정 : 2018. 03. 0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연구·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학교발전을 위한 장·단기 발전계획 수립, 추진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기구·조직의 설치, 개선 및 조정
3.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
4. 각 부서 발전 계획의 종합 및 조정
5.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
6. 교직원의 정원 조정
7. 소위원회의 보고 사항
8.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2. 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6조(운영)** 위원회의 추진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.

**제7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전담팀) 위원회의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둘 수 있다.

제9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변경) 「기획위원회」를 「발전위원회」로 변경한다.

제3조(통합·폐지규정) 「기획위원회 규정」, 「발전추진위원회 규정」, 「발전평가위원회 규정」, 「대학 특성화 추진위원회 규정」은 이를 통합·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전 「기획위원회 규정」, 「발전추진위원회 규정」, 「발전평가위원회 규정」, 「대학 특성화 추진위원회」에서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